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안내

(Ver 23.17)



구 분	주 요 내 용
근거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법 시행령 제3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li> <li>• 동법 시행령 별표 6(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li> <li>•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li> <li>•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li> </ul>
응시 자격	<p>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p> <p>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 및 제91조에 따른 고등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li> <li>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li> <li>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li> </ol> <p>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아.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p>

		<p>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 참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함</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원서접수일 기준에는 응시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시험일 기준으로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원서접수기간 중 가 접수 후 시험응시일 이전까지 해당 서류 제출</li> </ul>
시험 정보	시험명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일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일정 : 별도 안내 (안전원 홈페이지 <a href="http://www.kfsi.or.kr">www.kfsi.or.kr</a>)</li> <li>* 제1차, 제2차 시험 분리운영</li> <li>• 사이트 시험일정 참고(소방안전교육 &gt; 시험신청 &gt;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일정)</li> </ul> <p>※ 참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원 인터넷 홈페이지 “소방안전교육-시험신청·점수확인” 코너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일정 및 장소는 원서접수기간 중에만 등재됩니다.</li> </ul>

시험 정보	시험과목	구분	과목	내용	
		제1차 시험	1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안전관리자 제도</li> <li>○ 화재통계 및 피해분석</li> <li>○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및 안전관리</li> <li>○ 직업윤리 및 리더십</li> <li>○ 소방관계법령</li> <li>○ 건축·전기·가스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li> <li>○ 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법령</li> <li>○ 초고층재난관리법령</li> <li>○ 화재예방 사례 및 홍보</li> </ul>	
		제1차 시험	2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기초이론</li> <li>○ 연소·방화·방폭공학</li> <li>○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li> <li>○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li> <li>○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li> <li>○ 종합방재실 운용</li> <li>○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li> <li>○ 화재원인 조사실무</li> <li>○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li> <li>○ 피난안전구역 운영</li> <li>○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li> <li>○ 화재피해 복구</li> </ul>	
		제2차 시험	1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구조 점검·실습·평가</li> </ul>	
		제2차 시험	2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li> <li>○ 통합안전점검 실시(가스, 전기, 승강기 등)</li> <li>○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li> <li>○ 방재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li> <li>○ 자체점검서식의 작성 실습·평가</li> <li>○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li> <li>○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li> <li>○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li> <li>○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li> <li>○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가</li> <li>○ 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및 실습·평가</li> </ul>	
※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4					
시험방법 및 시간	※ 1) 시험과목은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관련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3) 제1차 시험(선택형 문제) 및 제2차 시험(서술형 주관식) 공통 적용				
	시험구분	출제과목	시험 방법	시험시간	문항수
	제1차 시험	1과목, 2과목	선택형 (4지 1선택)	120분	100문항 (과목별 50문항)
제2차 시험	1과목, 2과목	서술형 (단답형, 기입형 또는 계산형 문제 포함)	90분	총 20문항 (과목별 10문항)	

시험 정보	합격자 결정	시험구분	시험 방법	
		제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 ※ 가점수자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기간 중 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합격 처리됨	
	제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		
	합격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표일자 : 시험정보 - 시험일정 등 참조</li> <li>발표내용 : 합격자 명단(응시지역 및 응시번호)</li> <li>발표방법 : 안전원사이트(www.kfsi.or.kr) 공지사항</li> </ul> ※ 가점수자의 추가서류접수 후 확인 결과 응시자격 기준 미달인 경우 불합격 처리됨		
	자격증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기관 : 안전원 15개 시·도 지부</li> <li>신청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원 방문 : 시도지부에 내방하여 발급신청서 작성 후 발급</li> <li>2) 온라인 신청 : 안전원홈페이지의 온라인 발급 신청에 따른 발급</li> </ol> </li> </ul> ※ 발급수수료 및 배송료 별도		
시험의 일부 면제사항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을 면제 ※ 합격한 날(합격자 발표일)과 시험실시 일 기준으로 처리			
시험 접수	접수처	안전원 인터넷사이트 ※ 원서접수 기간 중에만 접수합니다.(응시자격 심사는 가능)		
	접수방법	구 분	시도지부 방문접수 (근무시간 : 9:00 ~ 18:00)	안전원 사이트 접수 (www.kfsi.or.kr)
		접수시 관련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시수수료 (현금,카드 등)</li> <li>사진 1매</li> <li>응시자격별 증빙서류(해당자 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시수수료 결제 (신용카드, 무통장입금)</li> </ul>
		증빙이 불필요한 경우	가 능	가 능
		증빙이 필요한 경우 (최초 학력,경력,학경력, 관련자격증의 경우)	가 능	가 능 단, 사전심사 필요 (5~7일 소요)
접수방법	※ 안전원 사이트 접수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습교육 수수료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급수 자격시험에 응시이력이 있을 경우 → '시험일정'에서 접수가능</li> <li>경력·학력·자격증 등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에 한함) → 홈페이지 내의 '응시자격 심사 신청'에서 해당 응시자격 신청(증빙자료 첨부) 단, 5~7일 소요되며, 심사완료 후 승인 시 '시험일정'에서 접수 가능</li> <li>마감된 시험일정의 경우 접수 불가</li> </ul>			
	[접수시 주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정된 일시 및 장소 외에는 일체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2. 접수된 응시원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li> <li>3. 시험일정 변경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시험 전 근무일 근무시간까지 가능하며 시험당일 이후에는 일정변경 및 환불신청이 불가합니다.(결시자 포함)</li> <li>4.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li> </ol>			

	수수료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수수료</th> </tr> <tr> <td>1차</td> <td>18,000 원</td> </tr> <tr> <td>2차</td> <td>24,000 원</td> </tr> </table>	구분	수수료	1차	18,000 원	2차	24,000 원																				
		구분	수수료																									
1차	18,000 원																											
2차	24,000 원																											
		<p>※ 계산서는 현금(무통장입금 포함)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p>																										
시험 접수	접수 내용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서접수 기간 : 별도 안내</li> <li>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 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불가</li> </ul>																										
	제출서류	첨부 참조																										
	환불 규정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금액</th> </tr> <tr> <td>시험시행 5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td> <td>전액 환불</td> </tr> <tr> <td>시험시행일 4일전부터</td> <td>환불 불가</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lt;예시&gt;</p> <table border="1"> <tr> <th>요일</th> <th>월</th> <th>화</th> <th>수</th> <th>목</th> <th>금</th> <th>토</th> </tr> <tr> <td></td> <td>5일전</td> <td>4일전</td> <td>3일전</td> <td>2일전</td> <td>1일전</td> <td>특급 시험일</td> </tr> <tr> <td>환불 기준</td> <td colspan="2">↶ 전액환불</td> <td colspan="4">환불불가 ↷</td> </tr> </table> <p>※ 시험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시험시행 5일 전일까지 가능. 단, 방문 환불신청의 경우 토요일, 공휴일은 불가</p>	구분	금액	시험시행 5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불	시험시행일 4일전부터	환불 불가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5일전	4일전	3일전	2일전	1일전	특급 시험일	환불 기준	↶ 전액환불		환불불가 ↷		
구분	금액																											
시험시행 5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불																											
시험시행일 4일전부터	환불 불가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5일전	4일전	3일전	2일전	1일전	특급 시험일																						
환불 기준	↶ 전액환불		환불불가 ↷																									
시험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험장소 : 별도 안내</li> <li>시험장소는 원서접수 기간 중 원서 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li> <li>시험장 위치는 <a href="http://www.kfsi.or.kr">www.kfsi.or.kr</a> 접속하여 “안전원소개-찾아오시는길” 참조</li> </ul>																											
응시표 교부	시험응시표는 응시자가 인터넷으로 출력 가능합니다.																											
시험 응시자 유의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시자는 응시표에서 정한 입실 시간(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까지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지역 및 시험장소의 지정된 좌석 이외의 장소 및 좌석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li> <li>응시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 후 입실시간 전까지 시험당일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여야 합니다.</li> <li>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p>※ 신분증의 범위 : 공무원증,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및 학생증(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에 한함)에 한함</p> </li> <li>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시험 시행일 전에는 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재출력 가능하며, 시험당일에는 시험감독관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때 응시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li> </ol> </li> <li>제1차(객관식)시험의 OMR 답안지 작성은 검정색 필기구(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 등)를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시험교시, 응시번호, 성명 등을 기재·표기하지 않거나</li> </ol>																											

**시험 응시자  
유의 사항**

- 틀리게 작성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3. 제2차(서술형 주관식)시험 답안작성은 검정색 또는 청색 필기구 중 동일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연필, 사인펜, 기타 유색필기구로 작성된 해당 답안은 “0”점 처리됩니다.
  - ※ 제2차 시험 답안 정정 시에는 정정할 부분을 두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기 바랍니다.
- 4. 시험실내에는 어떠한 통신장비(휴대전화기, 무전기 등),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액정 및 메모리 기능이 있거나 디지털카메라, 녹음기 등 촬영 및 녹취가 가능한 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 중 휴대할 수 없습니다.
  - ※ 휴대전화 등 금지품목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 가방에 보관하거나 가방 미소지자는 제공된 봉투에 넣어 보관
- 5. 제1·2차 시험 모두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시험감독관의 확인 하에 초기화(리셋)를 하고,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이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동 사항을 위반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반납하지 않거나 응시표 등에 문제를 옮겨 적어 가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 7.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8.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할 수 없으니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험시간 1/2 경과 후부터 시험지 답안지 제출 후 퇴실이 가능하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퇴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를 제출 한 후 퇴실 가능
- 9. 시험실에는 별도로 시계가 준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휴대전화는 시계대용으로 사용불가하며,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 10. 시험장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11. 응시자는 시험시행 공고문, 응시표, 시험장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을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12. “가접수자”는 접수기간 중 접수(시험응시원서 및 경력관련서류 등 제출)해야 하며, 시험응시일 전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응시자격 기준 미달인 경우 시험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13.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할 때는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4. 시험장은 주차공간이 협소하며, 지역별로 주차료가 징수되는 경우가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혼잡 등으로 정해진 시간에 입실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시험접수 및  
결제방법  
안내

1. 안전원 사이트 로그인
2. 안전원 사이트 “소방안전교육-시험신청” ⇨ “시험일정” 클릭 ⇨ 응시하고자하는 지부 시험날짜 클릭 ⇨ 시험신청자 정보입력 ⇨ 신용카드 결제 또는 LG데이콤 무통장 계좌할당 및 입금 ⇨ 시험신청 완료

The screenshot shows a web page titled '시험신청' (Exam Application). It features a breadcrumb trail: '홈 > 소방안전교육 > 시험신청-접수확인 > 시험 신청'. There is a yellow button labeled '나의 강의실' (My Classroom). Below this is a table with three columns: '시험과정' (Exam Course), '시험일정' (Exam Schedule), and '시험안내' (Exam Guide). The '시험일정' column contains links to '시험일정' (Exam Schedule) for each category. The '시험안내' column contains links to 'HWP 시험안내' (HWP Exam Guide) and 'PDF 시험안내' (PDF Exam Guide). The categories listed are: '특급 소방안전관리자(1차)', '특급 소방안전관리자(2차)', '1급 소방안전관리자', '2급 소방안전관리자', and '3급 소방안전관리자'. The '특급 소방안전관리자(1차)' and '특급 소방안전관리자(2차)' rows have their '시험일정' links highlighted with a red box.

※ 원서접수 기간 중에만 시험일정이 안전원 홈페이지에 등재됩니다.

지부별  
연락처

• 근무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 지부별 연락처

지부(지역)	연락처	지부(지역)	연락처
서울지부(서울 영등포)	02-850-1378	서울동부지부(서울 신설동)	02-850-1392
부산지부(부산 금정구)	051-553-8423	대구경북지부(대구 중구)	053-431-2393
인천지부(인천 서구)	032-569-1971	울산지부(울산 남구)	052-256-9011
경기지부(수원 팔달구)	031-257-0131	경기북부지부(파주)	031-945-3118
대전충남지부(대전 대덕구)	042-638-4119	경남지부(창원 의창구)	055-237-2071
충북지부(청주 서원구)	043-237-3119	광주전남지부(광주 광산구)	062-942-6679
강원지부(횡성군)	033-345-2119	전북지부(전북 완주군)	063-212-8315
제주지부(제주시)	064-758-8047		

**첨부**      **시험접수 관련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

- ① 시험응시원서 1부
- ② 사진(가로3.5cm×세로4.5cm) 1매
- ③ 시험 응시자격 증빙서류 각 1부(“유형별 제출서류” 참고)
  - ※ ③은 학경력등 시험접수자 중 처음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함

유형별 제출서류

**[유형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실무경력(선임경력)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1. 선임 및 해임 사실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①~③제출)**

- ①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 ② 실무경력 증빙서류(㉠ ~ ㉢중 택일)
  - ㉠ 선임 및 해임일자가 기록된 자격증(자격수첩) 사본 1부(원본지참)
  - ㉡ 소방관서 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인 경우 소방안전(방화)관리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대상물 등급은 별도 증빙 필요)
  -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이력확인서
-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증빙서류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2. 선임 사실은 확인되나 경력기간 증빙이 필요한 경우(①~④제출)**

- ①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 ② 선임 사실 증빙서류(㉠ ~ ㉢중 택일)
  - ㉠ 선임일자가 기록된 자격증(자격수첩) 사본 1부(원본지참)
    -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선임증으로 대체 가능
  - ㉡ 소방관서 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선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인 경우 소방안전(방화)관리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대상물 등급은 별도 증빙 필요)
  -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이력확인서
- ③ 실무경력 증빙서류(㉣, ㉤중 택일)
  - ㉣ 선임경력(재직)확인서 **[별지 2호] 서식** 및 공적증빙서류\* 각 1부(원본지참)
    - \* 4대 보험 가입증명서(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중 택 1)
  -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확인서(안전원 전산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생각가능)
    - ※ 실무교육 이수내역에 따라 실무경력 기간 산정
-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증빙서류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3. 선임여부 및 경력기간의 증빙이 모두 필요한 경우(①~③제출)**

- ①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 ② 실무경력 증빙서류(㉣, ㉤ 모두 제출)
  - ㉣ 선임경력(재직)확인서 **[별지 2호] 서식** 및 공적증빙서류\* 각 1부(원본지참)
    - \* 4대 보험 가입증명서(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중 택 1)
  -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확인서(안전원 전산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생각가능)
    - ※ 실무교육 이수내역에 따라 실무경력 기간 산정
-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증빙서류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유형2] 학력 확인 또는 소방안전관련 교과목 이수확인이 필요한 경우**

**1. 졸업(학위)증명서에 기재된 학과명이 관련고시의 학과명과 동일한 경우(①~②제출)**

- ①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 ② 졸업(또는 학위) 증명서 1부

**2. 졸업(학위)증명서에 기재된 학과명이 관련고시의 학과명과 다른 경우(①~③제출)**

- ①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 ② 졸업(또는 학위) 증명서 1부
- ③ 동일학과 인정확인서 **[별지 3호] 서식** 및 동일학과 인정 검토 의견서 **[별지 4호] 서식** 각 1부  
 ※ 성적증명서(이수과목 확인용)를 동일학과 인정 검토의견서의 첨부 자료로 제출

**3.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이수확인이 필요한 경우(①~③제출)**

- ①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 ② 졸업(또는 학위) 증명서 1부
- ③ 이수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성적증명서 등) 1부

**[유형3] 국가기술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1. 국가기술자격증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①~③제출)**

- ①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 ②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유형4] 총괄재난관리자 근무 경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1.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사실 및 경력기간을 모두 확인 할 수 있는 경우(①~③제출)**

- ①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 ②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사실 증빙서류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발급한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증 1부
- ③ 경력기간 증빙서류(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증에서 지정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생략가능)
  - 총괄재난관리자 근무 경력(재직) 확인 공적서류\* 1부
  - \* 총괄재난관리자 지정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공문, 지정 등록대장 등

**2.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사실은 확인되나 경력기간 증빙이 필요한 경우(①~②제출)**

- ①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 ②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사실 증빙서류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발급한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증 1부
- ③ 경력기간 증빙서류(㉠, ㉡ 모두 제출)
  - ㉠ 총괄재난관리자 근무 경력(재직) 확인서 **[별지 5호] 서식**
  - ㉡ 공적증빙서류\*
  - \* 4대 보험 가입증명서(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중 택 1)

**시험응시자 증빙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1.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단, 관공서 팩스민원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2. 증빙서류 중 안전원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것으로 간주함.  
예)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증빙서류, 실무교육 이수확인서 등
3. 경력사항에 대해서 유선 또는 문서 등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이 확인 시 시험응시가 불가함
4. 2개 이상의 대상물에서 근무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경력(재직)확인서는 대상물별 대표자로부터 각각 발급 받아야 함



[별지서식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경력(재직) 확인서				
<input type="checkbox"/> 특급 <input type="checkbox"/> 1급 <input type="checkbox"/> 2급 <input type="checkbox"/> 3급				
성명 (한글)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연락처	- 휴 대 폰 : - 일반전화 :	
증명사항	소속 및 직위	선임기간	경력기간	담당업무내용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small>*상기 경력기간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항(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 등)에 따라 선임된 경력은 제외함</small>				
용도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시험응시 제출용			
<p>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본 확인서가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에 필요한 경력입증용임을 인지함은 물론 이 증명이 허위, 위조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형사처벌(공·사문서위조, 변조 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년 월 일	발급자
대상물명 또는 상호 :			(연락처 : )	소속
소재지 :				직위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대표자 생년월일) :			(인)	성명
대표자 :				(인)
한국소방안전원장 귀하				



[별지서식4]

## 동일학과 인정 검토의견서

- 학교명 :
- 성 명 :
- 학위취득일자 :
- 응시자의 졸업 학과명 :
- 동일학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과명 :

가. 응시자 졸업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 (교과목 등으로 설명)	나. 동일학과로 인정받고자하는 해당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 (교과목 등으로 설명)	동일학과 인정에 대한 의견
		※ “가” 및 “나”항과 첨부 성적 증명서 이수과목을 참조하여 기술
※ 기타 의견		

응시자 졸업학과 학과장(교장) 확인 : 직인

첨부 : 이수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수과목 확인용, 성적증명서 등) 1부.

